



〈지난호 141쪽에 이어서〉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 (Anti-Dumping)

가. 개요

반덤핑 관세제도는 외국산 물품의 수입가격이 그 생산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인 정상 가격이하인 경우로서 그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어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다.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자와 당해산업을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다. 동 신청인은 신청서와 증빙서류 3부를 작성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재정경제원장관·관세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장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덤핑방기관세의 부과 및 조사개시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당해물품의 수출국 정부 및 수출자,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토록 되어 있다.

조사가 개시되면 덤핑률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조사하며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유무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가 조사하는데, 질문지·공청회 기타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6개월내(특별한 사유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시 연장가능)에 조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철회시나 산업피해가 경미한 경우 약속제의 수락(가격수정, 수출중지)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되며, 특히 덤핑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판정제도를 도입하여 조사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덤핑률 및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하여 잠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경제원장관은 관세청의 본조사결과 보고서와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WTO시대의 산업피해구제제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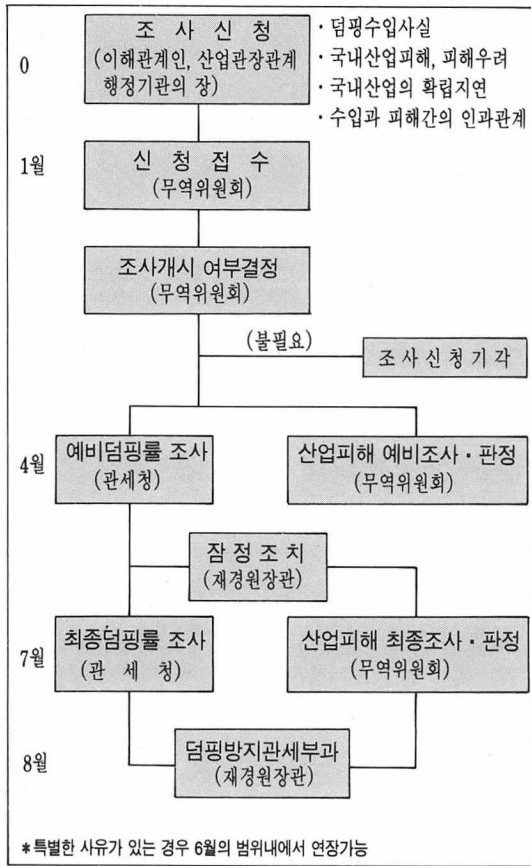
정진대 과장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 2과장)

이내에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리령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그 부과기간은 UR반덤핑관세협약의 규정을 반영하여 5년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공정가격 이하의 판매가 수입국의 동종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의 위협이 있어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판정을 위해 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의 범위확정, 실질적인 피해의 존재, 실질적인 피해위험의 존재, 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저해,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심사한다.

나. 절차도



다. 사례(유리장섬유)

국내의 한국베트로텍스주식회사(사장 : 이세훈)는 미국, 일본 및 대만으로부터 정상 가격이하로 수입되는

유리장섬유(Glass Fiber, HSK : 7019.10.0000, 7019.31.0000)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1993년 8월 9일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였다.

신청인의 제조사격, 신청서에 덤핑수입 및 산업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덤핑률, 산업피해사실 등의 경미함 여부 및 관계기관(관세청, 상공자원부)의 의견등을 검토한 결과, 국내산업의 범위를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동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2개 국내산업업체(럭키오웬스코닝, 한국화이버)가 동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지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신청인의 제조사격에 문제가 없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덤핑수입 사실, 산업피해 사실등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및 대만산 유리장섬유의 수입가격이 자국내 시장가격보다 상당수준 저가로서 덤핑협약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의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수입실적은 국내시장의 44.2%~56.2%로서 경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관계기관인 관세청과 상공자원부에서도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실등을 고려하여 1993년 9월 7일 덤핑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조사대상품목은 미국, 일본 및 대만에서 수입되는 유리장섬유로 하며 이를 양(조사신청 품목인 G75 1/0에 한함), 다이렉트로빙, 어셈블드로빙, 촛트스트랜드, 촛트스트랜드매트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신청인이 신청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산 촛트스트랜드매트와 대만산 어셈블드로빙은 제외하기로 하고, 조사대상기간은 신청인이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 '92년 4월부터 판정시점까지로 하고 필요시에는 그 이전의 자료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사개시결정에 따라 1993년 9월 15일 재무부는 이를 관보에 게재(재무부 공고 제1993-62호)하였고 무역위원회는 미국, 일본 및 대만산 유리장섬유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

고일로 부터 산업피해조사(무역위원회 조사번호: 대무 40-6-93-3)를 개시하였다.

무역위원회는 무역조사실의 산업피해조사 1과장으로 하고 조사단원으로 산업피해조사 1과 실무자 2명, 상공자원부 섬유생활공업국(요업과) 담당자 및 연구기관 연구원등 관계전문가 7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였으며, 1993년 9월 22일부터 9월 27일 기간에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에 대한 질문지를 송부하고 11월 10일까지 답변서를 회수하였으며, 같은 기간중에 공업진흥청, 산업연구원, 대한무역진흥공사 등을 통하여 유리장섬유 품목의 특성등에 관한 사항과 덤핑혐의 수출국의 산업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서면조사와 더불어 생산자 현지 방문 및 수요자, 수입자 접촉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조사대상 품목의 수입품과의 특성비교를 위하여 공업진흥청산하의 시험기관인 요업기술원에 의뢰하여 수입품 및 국내생산품에 대한 품질도 비교검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93년 12월 14일(조사개시후 3개월 이내)까지 예비조사를 종결하고 예비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조사대상품목이 다양한 세부규격으로 구분되고 수출국도 3개국으로서 조사의 내용이 매우 복잡함을 사유로 무역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여 조사기간을 1개월 연장하였다.

이렇게 기간을 연장조사하여, 무역위원회는 국내 유리장섬유산업의 범위를 최근 6개월간 덤핑물품의 수입 실적이 없고 동 수출자와 특수관계도 없는 신청인인 한국베트로텍스(주)로 한정하고 이러한 국내산업은 '92. 4월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 이후 국내시장에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적자로 경영이 안정되지 못하고 같은 기간동안 덤핑혐의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국내가격보다 저가로 수입되어 국산품의 가격을 억제하는 등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추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이유로 1994년 1월 11일 산업피해 공정예비판정을 내렸다.

한편, 관세청은 덤핑수입여부를 조사하여 1994년 1월 7일 미국, 일본 및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유리장섬유

가 국가별, 규격별로 9.10~82.43% 덤핑가격으로 수입된다는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이러한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의 예비판정을 근거로 하여 재무부는 1994년 2월 8일부터 4개월간 덤핑마진율과 같은 수준으로 잠정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위원회 조사단은 예비판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피해 우려 또는 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여부를 최종판정하기 위하여, 생산자 및 수출자 그리고 수입·수요자에게 추가질문지를 송부하여 조사기간중의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1994년 1월 25~26일, 2월 15~19일에는 국내산업인 한국베트로텍스(주)와 주요 수입업체인 패시픽화이버그라스(주), (주)럭키, (주)삼양사, 애경공업(주), 경일산업(주), 고합ENPLA(주)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수집 활동을 하였다. 또한 조사기간중 생산자인 한국베트로텍스(주), 럭키오웬스코닝(주), (주)한국화이버는 물론 수입·수요자와의 수시면담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자료수집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이와같은 조사과정을 거쳐 수집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조사단은 조사보고서(초안)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허용하였으며, 1994년 3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모든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공청회 참석이 허용되었으며 조사보고서(초안)를 근거로 공청회전 의견진술과 공청회시 의견진술 그리고 공청회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조사단은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추가자료를 포함하여 본 최종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보고서를 1994년 4월 12일 개최되는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무역위원회는 무역조사실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관세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 4 제5항 및 대외무역법 제40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 일본 및 대만으로부터 덤핑수입되는 유리장섬유(HSK 7019.10.0000, 7019.31.0000, 조사대상품목중 판넬용 어셈블드로빙, 폴리아세탈용, 줍트스트랜드, 나일론용 줍트스트랜드는 제외)로 인하여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 되었다고 결정하였다.